



기업뱅킹 매뉴얼

Hanabank corporate Banking User Manual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B2B전자결제 > 판매기업 > 동반성장론(협력)-상생결제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1.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안내 및 유의사항
2.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1.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안내 및 유의사항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개요

1. 동반성장론(협력) 상품에 대한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을 진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2. 동반성장론(협력) 상품은 대출한도 신청여부에 따라 만기입금약정과 만기전 할인(대출)약정으로 구분됩니다. 약정 체결 시, 1차 협력기업은 하위 협력기업 앞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있으며, 2차 이하 협력기업은 상위 협력기업으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기입금약정은 채권의 만기일에 대금이 입금되는 약정입니다.
4. 만기전 할인(대출)약정은 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할인(대출) 실행이 가능한 약정입니다. 해당 약정은 만기입금약정을 겸하며, 관리영업점의 승인 전까지는 만기입금약정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관리영업점 승인 후 할인(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만기전 할인(대출)약정의 최소신청금액은 100,000원 이며, 대출한도 신청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영업점의 승인 시에 약정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되며, 잔액 부족 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 금액 이상의 지급가능잔액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대출한도 신청일로부터 2개월까지 관리영업점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한도 신청은 자동으로 거절되며 만기입금약정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협력기업 약정)

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약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협력기업 약정		처리결과 조회	
고객명	(주)하나판매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안내 및 유의사항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e-구매론 등 어음대체결제 방식」 약정 시의 유의사항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에 따라 구매기업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에게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지급승인 등의 만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의 지급일 경우, 물품 등을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만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 ② 「하도급법」상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만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 ③ 물품 등을 받은 날 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외상매출채권/지급승인 등의 만기일을 지정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법」 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구매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피해 발생 시, “중소기업 위수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mss.go.kr>)”을 통해 제보 가능합니다.

개요 및 안내

- ※ 동반성장론(협력) 상품 약정 시 “원청채권(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수취한 상생매출채권”, “동반성장론 1차협력기업이 예치한 현금”을 근거로 하위 협력기업 앞 상생매출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원청채권은 구매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게 전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말하며, 상생매출채권 발행의 근거가 됩니다.
 - 상생매출채권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원청채권을 근거로 하여 상위기업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매출채권을 말하며, 동반성장론 1차 협력기업이 예치한 현금 범위 내에서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 ※ 원청채권(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발행구조 : 구매기업 → 1차 협력기업 앞 발행
- ※ 상생매출채권의 발행구조 :
 - (①상기 원청채권 근거 또는 ②상기 원청채권 없이 1차 협력기업이 예치한 현금 근거) 1차 협력기업 → 2차 협력기업 앞 발행
 - (상위업체로부터 수취한 상생매출 근거) 2차 협력기업 → 3차 협력기업 → 4차 협력기업 앞 발행
- 01 동반성장론(협력) 약정한 1차 협력기업이 동반협력기업 약정을 추가하실 경우 (만기입금/만기전환인(대출) 약정 중 택1)
 - 당행과 동반성장론 업무협약을 맺은 원청채권(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 또는 다른 동반협력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 또는 1차 협력기업 본인이 예치한 현금을 근거로, 하위 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발행 가능
- 02 동반협력기업(2차 이하 협력기업)의 경우 (아래 ①만기입금/②만기전환인(대출) 약정 중 택1)
 - 약정종류
 - ① 만기입금 약정
 - (1) 상위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상생매출채권 만기에 대금을 수령
 - (2) (조건 : 원청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도래에 따른 결제완료) 기수취 상생매출채권의 선지급 신청을 통해 만기전 대금 조기입금
 - (3)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위기업 앞 또다른 상생매출채권 발행가능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협력기업 약정)

약정정보 입력(만기입금약정)

약정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판매기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 ① [기업담당자 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기업(본인)의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② 약정영업점, 약정(입금)계좌를 선택합니다. [약정가능 영업점 찾기] 버튼 클릭 시 약정가능 영업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대출한도 신청여부를 선택합니다. 만기입금약정 선택 시 발행된 채권이 만기일에 약정계좌에 입금되는 단순 이용약정으로 진행됩니다. (대출(=만기전환인) 불가능)
- ④ 모든 약정 정보를 입력했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협력기업 약정

처리결과 조회

판매기업

1 기업담당자 관리

판매기업명	(주)하나판매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대표자	김하나	기업규모	중기업(법인)
업종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업태	업태명
주소	(045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담당자	김하나	담당부서명	하나부
대표 전화번호	02-111-1111	팩스 번호	
휴대폰번호	010-1111-1111	담당자 이메일	
문자 수신여부	수신하지 않음	이메일 수신여부	수신하지 않음

2 약정영업점 약정가능 영업점 찾기

* 주의 : 하나은행과 이미 기업어신(수출입 포함)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약정영업점을 기존 기업어신 관리점으로 변경 지정해 주세요.

약정(입금)계좌

3 대출한도 신청여부

4 취소 확인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협력기업 약정)

약정정보 입력(만기전 할인(대출)약정)

- ① 대출한도 신청여부를 선택합니다. 만기전 할인(대출)약정으로 선택할 경우 발행된 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대출(=만기전할인) 가능한 약정으로 진행됩니다.
- ② 외상매출채권 결제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출한도 신청금액을 입력합니다.
- ③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약정영업점 [약정가능 영업점 찾기](#)

* 주의 : 하나은행과 이미 기업어신(수출입 포함)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약정영업점을 기존 기업어신 관리점으로 변경 지정해 주세요.

약정(입금)계좌 100-1000000-10000 | 기업자유예금

1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전 할인(대출)약정

판매기업 한도신청

신청금액별 인지세 부과기준

2 대출한도 신청금액

총 인지세 70,000 원 | 고객부담 인지세 35,000 원 | 은행부담 인지세 35,000 원

3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협력기업 약정)

약정서 동의

구매기업의 약정상품종류 및 대출한도 신청여부, 법인/개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약정서 목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약정 신청을 위한 약정서,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박스를 클릭해 동의합니다.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협력기업 약정

처리결과 조회

상환청구권에 대한 설명

상환청구권에 대한 설명

상환청구권이란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상환청구권 유무는 판매기업이 결정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과 은행의 협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판매기업은 이에 따라야만 여신거래약정이 가능합니다.

1.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의 외담대(WR)

구매기업이 만기에 채권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2.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외담대(WOR)

판매기업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채권만기에 구매기업 결제여부와 관계없이 판매기업 명의의 대출금은 자동상환 됩니다.

1 상환청구권에 관련된 내용을 확실히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

한도감액정지조항설명서인쇄

자세히보기

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음)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 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약관 포함)"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1 통합약정서 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하여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락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협력기업 약정)

약정서 동의

- ① [금융거래 계약서류 전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서류 다운로드 및 서류 확인 후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 ② OTP 번호를 입력합니다.
- ③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동반성장론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율 기준표

[자세히보기](#)

동반성장론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율 기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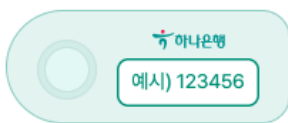
거래금액(결제금액)	정액수수료	정률수수료
일백만원 이하	1,000원	0.2%(최저수수료 500원)
일천만원 이하	3,000원	0.05%(최저수수료 2,000원)
오천만원 이하	7,000원	0.02%(최저수수료 5,000원)
일억원 이하	12,000원	0.015%(최저수수료 10,000원)

이용수수료율 기준표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음.

1 금융거래 계약서류 전체 다운로드

1 본 약정에 대한 약관 등 주요내용 설명사항을 이해하였으며, 계약서류를 다운로드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OTP 번호 입력



2 일련번호(S/N) 당첨번호/당첨번호

① OTP화면에 표시된 6자리 숫자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이용일자에 관계없이 OTP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연속하여 10회 누적될 경우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OTP 비밀번호는 모든 항목을 입력하신 후 마지막으로 입력해 주세요.
- OTP는 정당한 전자금융거래시에만 사용해야 하며, 번호를 생성한 후에는 빠르게 입력해 주세요.

인증서가 없으신가요? [인증서발급/재발급 >](#)

취소 3 확인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협력기업 약정)

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이 완료되었습니다.

① 해당 단계에서는 '만기입금약정'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신청한 경우 [만기전 할인(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해야 대출한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협력기업 약정

처리결과 조회



협력기업 신규 약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만기전 할인(대출)한도를 신청하신 고객님은 [만기전 할인(대출) 신청]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되며, 관리 영업점의 승인 여부는 처리결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등록정보

기업명	(주)하나판매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약정은행	하나은행	약정계좌번호	100-100000-10000
약정기업 구분	동반협력기업	약정번호	040000S2026011500000

동반성장론(협력) 판매기업 한도신청

협력기업명	(주)하나판매	약정영업점	남동기업센터(032-816-1111)
대출한도 신청금액(원)	100,000,000	총 인지세(원)	70,000
고객부담 인지세(원)	35,000	은행부담 인지세(원)	35,000

1

만기전 할인(대출) 신청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처리결과 조회)

- ① 조회 조건을 선택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구매기업명을 클릭하면 해당 약정의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③ [인지세 납부내역 조회] 버튼 클릭 시 [인지세 납부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협력기업 약정 처리결과 조회

조회기간: 오늘 | 1주일 | 15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2025-12-16 ~ 2026-01-15 월별 선택

•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조회

인쇄 | 다운로드 | 설정

신청구분	한도신청일	신청금액(원)	신청상태	구매기업명	구매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코드
신규한도신청(동반성장론(협력))	2026-01-15	100,000,000	신청	2 (주)하나구매	222-22-22222	W0000

3 인지세 납부내역 조회

i 안내 및 유의사항

• 외담대/e-안심팩토링/동반성장론 판매기업 만기전 할인(대출)한도 신규약정 및 증액신청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ANK YOU